



# 서울메트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선물·경조비 수수범위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 내용 알림**

1. 관련근거

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4660호('16.10.31) 「청탁금지법 선물·경조비 수수범위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 내용 알림」

나.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16233호('16.11.3) 「청탁금지법 선물·경조비 수수범위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 내용 알림」

2. 청탁금지법 관련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가능한 선물과 경조비의 범위에 대한 권익위 해석내용과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 유권해석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및 권익위 유권해석 결과**

연번	질의내용	유권해석 결과
1	승진·전보시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이하 화훼류 선물 허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동료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금액을 초과하는 선물, 경조비 수수 가능</li> <li>•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사고·의례목적으로 제공하는 허용 금액 범위내의 선물, 경조사비는 수수가능</li> </ul>
2	결혼·장례시 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 이하 경조비(축의금, 화환등) 허용여부	
3	명절(설, 추석)에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이하 과일류 선물 허용여부	

※ 단, 인허가 등 신청자, 절차 진행중인 계약 상대방, 조사수사를 받는 자, 성적평가 대상인 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는 제외

- 붙임 : 1. 관련문서 1부  
 2. 선물, 경조비 관련 권익위 유권해석 내용 1부  
 3. 선물, 경조사비 관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 해석내용 1부. 끝.

## 서울메트로사장

수신자 가1-40, 나1, 다1, 라1-2, 마1-13, 바1-13, 사1-11,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주), 서울메트로환경 (주), 부산김해경전철운영 (주)

과장 **원종면**      부장(업무대행) **장남택**      처장(업무대행) **이택수**      감사실장      전결 11/07  
**장상덕**

협조자

시행 청렴감찰처-13(2016.11.07.)      접수 (      )

우 137-712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방배동)

/ [www.seoulmetro.co.kr](http://www.seoulmetro.co.kr)

전화 02-6110-5752      전송 02-6110-5819      / [redstar@seoulmetro.co.kr](mailto:redstar@seoulmetro.co.kr)

/ 대시민공개